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1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위성곤·김한규·김성환

이기헌・조 국・박정현

한병도 · 문대림 · 주철현

허 영 · 서영교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 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다.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6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 조).
- 아.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7조).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 성화,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란 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영 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포 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은 「농지법」 제28조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한다.
 - ⑤ 이 법은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허가기간은 23년으로 한다.

제2장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을 발전시설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 2. 제1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설립한 법인

는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제6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지구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확산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 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결정하고 발생한 수 익금의 3배의 범위 이내에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 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발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 제12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사용을 위한 표준 시설 및 설치 규격과 표준 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5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벌칙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